

차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3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19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41
생명권과 의약품 특허	73
참고자료	104

1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검열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 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저녁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표현하고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정보화의 가장 놀라운 혜택이다.

인터넷의 등장

표현의 자유는 일찍이 근대시민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등장했다. 17세기 근대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적 봉건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계급이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민혁명 이후 표현의 자유의 수단인 언론과 출판물 부르주아 계급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는 매스미디어가 언론을 장악했다. 대형 언론과 출판 위주의 미디어 환경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으며, 일반시민이 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인권 규범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강조되었다. 유네스코는 1976년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여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1978년의 <매스미디어 선언>과 1980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 정보 질서가 정보 독점으로 심각하

게 왜곡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일었던 것이다.

그 무렵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매스미디어의 독점과 왜곡을 바로잡고 인류의 의사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초기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 존 페리 바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그러나 최근 인터넷은 악성 댓글, 즉 악플로 얼룩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악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20조)고 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제21조 제2항) 더불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히 인터넷에 대하여 언론자유 헌법적 가치가 진정으로 꽃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이 매체에 대한 정부의 내용적 및 구조적 규제는 헌법적으로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내용규제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검열 금지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내용물 심사는 엄격한 위헌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즉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서적, 영화, 음반,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인 표현물을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하고 그 발표를 허가 혹은 강제로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

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표현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금지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불법 표현물 규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불법표현물’이란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불법표현물은 유통뿐 아니라 제작까지도 금지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벌이 가해지고,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표현물

-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50조, 제251조)
-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

물론 음란의 기준, 명예훼손의 기준, 선거시기 이용자생산콘텐츠(UCC) 금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적 발언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여기서 법률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중국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불법표현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적인 검열은 금지되고, 표현물의 제작이나 배포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현물의 제작자나 배포자가 사후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심의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역시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그 결과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소송 절차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한 구제나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해외에는 다양한 민간의 핫라인(hot-line)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보완적 제도가 개발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삭제 권고를 내려온 데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유해표현물 규제

한편, 표현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에 근거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유해 표현물은 제작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등급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유통이 통제되는 표현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대표적이다.

공공적인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의 표현물 규제입법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는 청소년의 알권리와 접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표현물일지라도 이들 표현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토록 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영리의 목적’에 국한시키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또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 등급제에 따른 논란이 존재한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결정과 고시가 민간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가 제도운동을 담당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수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될 경우 유해문구, 유해로고와 더불어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

물 규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등급 부여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급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사후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자율 심의기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노스쿨 폐쇄사건

2001년 6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행정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탈학교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을 폐쇄하였다. 아이노스쿨은 2000년 11월 개설되어 학교를 자퇴하거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의견과 정보를 나누던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폐쇄한다고 밝혔다. 자퇴 조장, 학교 비판 등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사전 고지나 의견 제시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보내진 시정요구 공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실명과 익명 표현

2004년부터 한국에서는 선거시기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으로 확인된 자에게만 글쓰기를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인터넷 실명제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법률로써 국가가 강제하는 국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 효과는 2009년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악플을 게시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명확인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이버문화의 개선을 법규범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권리를 침해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익명과 실명 사용은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문제로서 국가가 과태료를 통해 강제로 도입할 정책이 아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업체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에 역행하여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편의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

차별금지법안과 실명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실명 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댓글 쓰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 <참세상> 등 몇몇 인터넷언론이 이에 저항하여 익명 정책을 유지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1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었다.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 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가

초기 네티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여주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무한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란은, ‘정부’가 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물 배포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거진다. 오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 사회이지만, 행정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방송·서적·영화·만화 등 고전적 표현물의 뒤를 이어 인터넷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심의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 실명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음란’이나 ‘이적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선거시기 후보나 정당에 대한 UCC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률로 인하여 비판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거나 명예훼손이라며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미네르바 사건

2009년 1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항소하였다.

이러한 내용규제가 기술적 수단으로 강화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를 통한 검열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이 만연하고 포털이나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삭제가 확대되면 인터넷은 기술을 통제하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토론주제

1. 최근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현실에서의 행위보다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논의 중이다. 인터넷의 표현은 현실 세계에서의 표현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가?
2.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방송과 다르므로 그 내용규제도 방송과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인터넷은 방송과 어떠한 점에서 다르고 그 규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보자.
3. 실명을 사용하여 글을 쓸 경우와 별명을 사용하여 글을 쓸 경우 글의 내용이 달라지는가? 실명제와 자기 검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4. 2009년 1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미네르바’가 구속되어 사회가 떠들썩하였다. 2009년 5월에는 노동절 시위 진압과정에서 장봉을 휘두른 경찰의 사진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2

프라이버시권 과 감시

2008년 2월 국내 굴지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고객 1천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한민국의 성인인구를 3천500만 명으로 볼 경우 1/3에 해당하는 규모의 유출사고였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울렀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원격행정과 원격거래가 확산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이 무척 손쉬운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이 과거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 부여되는 13자리 숫자는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 한번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도 평생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 때문에 옥션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정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어 40여 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았다.

정보화와 사생활의 위협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사회에서 필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수기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수집되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화된 정보는 대규모로 수집되고 집적될 수 있다. 가공하여 이용하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기에도 훨씬 용이한 형태이며 그에 따른 권리 침해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판매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무단이용, 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온라인화에 따른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원격 거래와 원격 행정이 발달하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매개로 한 신원확인 요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원확인 요구가 늘면 늘수록 그에 비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탐하는 욕구와 유혹 역시 과거보다 급증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 경제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상업성 또한 증

가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직접발송우편(Direct Mail) 마케팅 기법은 우편 발송이 시작되면서부터 확산되어 왔지만,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 수단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이 정보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 마케팅의 한계를 넘어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 기법(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개발해 왔으며, 여기서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뿐 아니라 직업, 계층, 구매이력, 취향 등 특성별로 분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구매력을 중심으로 한 고객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와 정교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해 왔으며 개인정보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간주된다.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은 종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에 따른 유출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권리 침해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그로 인한 2차 피해이다. 즉 유출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명의도용이나 자격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나 공공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또한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규범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이다. 이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 부르며, 오늘날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나의 사생활과 신체,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몸이나 집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16조) 수사상 필요에 의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는 헌법 조항은 자신의 명예를 비롯하여 사생활 전반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부여되고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제18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을 감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체로 대면접촉에 의존하던 전근대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비대면접촉이 늘어나면서 기록이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기록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 자신의 실체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서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이용해야 한다.

또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면서, 상업적인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고 가택 방문 영업이 늘어났다. 개인정보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과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목소리, 얼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980년에 발표된 OECD의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시민과 노동자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OECD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2.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목적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늦어도 수집시까지 명확화되어야 한다.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제9조에 의하여 명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기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5. 안전확보의 원칙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파괴·사용·수정·공개 등의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발, 실시, 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자의 신분, 주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개인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① 개인정보 관리자가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권리

②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통지받을 권리

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나. 만일 필요하다면 과다하지 않은 비용으로

다. 합리적인 방법과

라. 알기 쉬운 형태로

③ 위 ① ②의 요구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④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정보를 삭제, 수정, 완성, 보완할 수 있는 권리.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의 제반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책임이 있다.

OECD의 원칙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하였다. 유엔에서도 1990년 OECD 원칙에 상응하는 <컴퓨터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으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 정보관리통제권,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함께 인정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5.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반감시권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전에 정부와 기업은 모든 정보를 종이에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정보는 종이 파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도 있다. 즉, 감시가 매우 손쉬워진 것이다. 감시란,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감시이다.

빅브라더의 등장

감시 사회의 모습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잘 보여주고 있다. 독재자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전국민을 감시한다. 이 소설에서 국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감시 사회의 또다른 모습은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원형감옥)>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1791년 벤담은 이 감옥을 설계하면서, 감방은 환하게 한 눈에 보이고 간수들이 있는 중앙의 감시탑은 어렵게 만들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지금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죄수



원형감옥

들은 항상 간수들이 원하는 대로 규율을 지키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이것이 감옥 뿐 아니라 근대 권력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매커니즘이라고 보았다.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이 정해놓은 규칙에 순종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종의 파놉티콘이다. 한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CCTV와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 한 개인의 행동 뿐 아니라 인간관계, 취향, 사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때로 포털에, 때로 마트에, 때로는 주차장 CCTV에 따로따로 보관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연동되고 통합되면 가상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이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추적당한다는 느낌이 우리의 행동과 생

각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활동을 망설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꺼리게 된다. 불법으로 여겨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약간의 저항적인 생각도 삼가게 될 것이다. 감시가 내면화되면 우리의 자유와 주체성이 사라진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의 통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대다수 국가가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되고 있다.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세무자료 등 각종 정보가 전산처리되면서 행정기관은 국민의 개인적 신상은 물론 경제적 사정까지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로 통신 내용을 저장하고 감청하는 것이 손쉬워지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인터넷의 저장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손쉬운 감시와 추적의 대상이 된다.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통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 기관	합계
2004	106	554	8,201	289	9,150
2005	100	241	8,082	112	8,535
2006	43	131	8,440	51	8,665
2007	41	95	8,628	39	8,803
2008	24	94	8,867	19	9,004

*출처: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전자국가신분증 반대운동

19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하나의 IC칩 속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해 10월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을 지적하며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과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98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중단되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져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2001년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제2의 전자주민카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번호 △지문 △이름 △혈액형 △처방내역 △병력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를 IC칩에 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하였다. 200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등 대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재추진하였다가 보류하였고, 2006년 다시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여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지문 △주소 △인증서 등을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잠정 연기하였다.

2008년에는 끝내 외교통상부가 IC칩을 내장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지문 정보 수록은 보류되었다.

기업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계속 관리하고, 웹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새로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시장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를 개발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고객의 통신수단으로 계속 광고를 내보내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 한 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는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리거나 기업간의 제휴, 인수, 합병 등으로 공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고객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말이 있다. 고객이 크리스마스 전구를 사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면 고객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취향, 재정상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특정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이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한다. 이른바 고객 성향에 맞춘 ‘맞춤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정보도둑’을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감시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일상 생활의 여가와 취미가 철저하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작되고 조정되는 사회적 감시가 확산될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무력화

이러한 사회적 감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기업과 소비자, 국가와 국민, 사용자와 노동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측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측 사이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자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기업은 노동과정 통제를 위해 CCTV 등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데, 고용 관계에 매여 있는 노동자 개인이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는 다양한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이용한다. 특히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경찰력을 부쩍 강화한 최근의 국가들은 통신 회사들이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제공받거나 감청을 확대한다. 일반 개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CCTV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기 어렵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다. 특히 전자(생체)여권 등을 이용한 국제적인 생체 정보의 교환은 우려스런 현상이다. 한국에선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한 국민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개인 식별과 추적을 위한 용이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시민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CCTV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

2001년 7월 어느날 전북지역업체 (주)대용 작업장에 밤새 CCTV가 설치되었다. 노동조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관리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하였지만 인권단체들의 항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9월에 결국 CCTV를 철거한다. 그러나 이후 노동부에서 CCTV를 이유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측의 징계가 잇따라 물의가 일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으며, 2008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였다.

현대의 감시는 굳이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나 CCTV는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때 고지를 했더라도 감시 기술이 애초 밝힌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도 많다. 예를 들어 교통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집회시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한다면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이 개인정보 수집자와 대등한 위치가 아닐 경우 무용지물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정부나 기업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있어도 개인이 실제로 자기 정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은 보다 적극적인 ‘반감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감시권은 감시에 대한 집단적 권리이며 거부권이기도 하다. 반감시는 정부와 기업과 같은 권력기관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감시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주로 걱정해 왔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권력을 반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데이비드 라이언 <전자감시사회>

국민은 정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도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인터넷 쿠키 등을 이용한 기업의 은밀한 감시 기술에 대하여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반감시권은 일부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로 제도화되어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정부와 기업의 감시 기술에 대하여 공공적으로 평가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시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생각과 활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반감시 운동은 개인과 집단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감시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CCTV 반대, 생체(전자)신분증 반대와 같은 반감시 운동은,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려는 데 저항한다.

기술에 의존하기 전에

미래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곧잘 만날 수 있는 주제이다. 정말 그런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감시 권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는 과거처럼 감시자가 감시대상자의 눈 앞에서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다. 그래서 모욕감이나 인권 침해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침해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밀할수록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그에 따른 오남용이 커질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감시 기술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 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CCTV와 같은 감시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전자 장비의 객관성, 무결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그 이외의 대안을 모두 배제해 버릴 수 있다. 지하철 객차마다 2대씩 CCTV를 도배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1인 탑승이나 무인화를 재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CCTV만 남겨놓고 보안 인력이 철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순찰을 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특히 CCTV와 같은 대량의 개인정

보 수집장치는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유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꾸준히 계속되는 경찰력의 강화와 첨단감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사회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율의 증가는 냉혹한 시장논리와 빈곤의 증대, 공동체의 파괴와 관련이 깊다. 즉,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CTV와 같은 감시 권력의 확대를 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안 위기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결과이다. 아니, 때로는 그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가 횡행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매일매일 경계해야 하는 처지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는 풍토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타자’의 범죄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만든다.

이때 CCTV는 공포스럽고 혐오스런 타인을 주시하여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국가권력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둘씩 늘어간 CCTV는, 결국 경찰력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강화된다면 경찰국가가 등장할 수도 있다. 강화된 경찰 권력이 소외된 민중의 저항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쓰이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경찰력의 강화가 아니라 경찰이 불필요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약자가 혼자 다녀도 안전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경찰이 아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사회. 반감시 운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토론주제

1. 최근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지문으로 출입하거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카드 회사나 은행이 지문이라는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함에 따라 그로 인한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편리함을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자.
2. 회사가 근무 태도를 모니터링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몰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때 이 회사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어떤 측면에서 침해되었는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토론하라.
3.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도입할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 국민이 17세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케 하고 경찰이 평생 관리하도록 한 것이 전세계 유래 없다는 점에서 주로 비판받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를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에서 논하라.

3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2009년 2월, 한 블로거는 5살짜리 딸 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었다. 몇 달 후,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블로그를 서비스하고 있던 포털에 저작권 위반으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은 차단당했다.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작권과 공정이용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겨왔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로 남겨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미니홈피를 장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저작권’이라는 암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든 시를 시평과 함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가 환경오염에 관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크랩하여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다. 자신이 구매한 음반에서 MP3 파일을 만든 후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저작권 위반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집에서 원격으

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신문을 오려서 기사 스크랩을 했었다. 시집을 사서 동아리 친구들이 돌려 보기도 했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베스트 음악을 선곡하여 테이프를 선물하기도 했었다. 인터넷에서는 더 쉽게, 더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저작권법이 불법복제 테이프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로 단속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법은 우리들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문화·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아래와 같은 권리들의 다발이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예를 들어, 내가 생뿔쥬베리의 ‘어린왕자’를 샀다면,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린왕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인 생뿔쥬베리가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산 ‘어린왕자’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사해서 배포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수는 없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영상), 사진, 미술 등의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건축물이나 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문,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지식과 문화의 특성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유체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햄버거와 같은 유체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내게서 없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 생산물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내가 어떤 지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지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비경합성) 그리고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이상,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뇌 속으로 전파된 지식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법이다.(비배제성)

또한, 어떠한 지식도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기반이 없었다면 창출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지식과 문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좋은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많이 듣고 학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논문들은 수많은 다른 논문의 인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와 같은 창작물은 소설, 음악, 미술, 다른 영상물 등 수많은 저작물의 종합이다.

어떤 물건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면 소유권(혹은 점유)만 변화될 뿐이지만, 지식과 정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수록 확대 재생산된다.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이 옮겨짐으로 해서 내 초의 불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전체가 더욱 밝아지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전파될수록 사회적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저작권 침해를 해적질, 즉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지식과 정보의 전파, 공유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과는 다르며,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자에게 제한된 기간(이를 저작권 보호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제한된 권리(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문화예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산업상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특허’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이 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선구자인 리처드 스톨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보호의 대상이나 적용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이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그는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창작물이 쉽게 복제·전파되며 비경합성·비배제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창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타적인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을 많이 향유함으로써 창작을 위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논

문이나 영화와 같이 다른 저작물의 이용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한 저작물도 많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의 강화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제한된다. 우선 여타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된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다.(이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예를 들어, 80세에 죽은 어떤 소설가가 30세 때 창작한 소설은 100년 동안이나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호기간 내에라도 공공적 목적이나 지식의 확산을 위해 배타적 권리가 일정하게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제2장4절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각 조항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가 실제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한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제30조) 예를 들어 8시에 하는 드라마를 퇴근 후에 보기위해 VCR로 녹화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동하면서 듣기 위해 구입한 MP3 파일을 MP3 플레이어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제28조) 예를 들어 다른 논문의 문장을 내 논문에 인용할 수 있다. TV 드라마를 통한 상품 광고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드라마 장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화 장면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학생들도 필요한 영화 장면을 편집하여 과제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제25조)



이와 같은 배타적 권리의 제한은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축인 ‘특허’에도 존재한다. 특허 역시 보호기간이 제한된다. 특허의 경우 ‘출원 후 20년’ 동안 보호된다. 또한, 국가 위급 상황이나 공중의 건강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실시’라고 한다.

기술혁신과 저작권

앞서 얘기했듯이,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혹은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균형 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창작의 인센티브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손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기술혁신에 따른 복제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균형 지점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지점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은 저작권에 근본적인 모순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혁신은 언제나 저작권자의 반발을 가져왔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00년대 초, 음반과 축음기가 보급되던 시기에 작곡가 존 필립 소사는 의회에서 “축음기가 이 나라 음악의 예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음악 업계를 위협하던 범

법자들은 바로 음반사들이었다. 그러나 이후 음반 제작자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맞선 싸움의 최전선에 서있다.

1960~70년대 케이블 TV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송국들은 케이블 TV가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전송함으로써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976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월트 디즈니가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의 VCR이 저작권 침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 미국 대법원은 시청자들이 VCR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VCR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합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한 VCR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새로운 기술 혁신은 보다 많은 대중들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 축음기와 음반이 없었다면 음악이 대중화될 수 있었을까? 케이블 TV와 VCR 등이 없었다면 방송이나 영화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혁신적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기존 저작권자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과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나 전송권과 같이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소니 판결과 같이) 기존 관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행 저작권 체제에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과 저작권의 위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복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복제물의 질도 원본과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도 주로 기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길거리에서 불법복제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복제와 배포가 주된 것이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복제와 전송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수백만 개의 음악 파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도 과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를 하는 소수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잠재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케이블 TV나 VCR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에 위협을 느낀 권리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해적행위’를 비판하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이미 1996년에 공중전달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디지털 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냅스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2001년 냅스터는 모든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문을 닫았다. 또 다른 방식의 P2P 프로그램인 카자와 그록스터 역시 2005년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전송권’이 신설되었으며,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거의 매년 제출되고 있다.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역시 2001년 첫 소송을 당한 이후, 수 차례 소송과 위법 판결을 반복하였다.

권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저작권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용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읽을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저작물을 읽기 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혹은 내가 산 CD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행위들이 인터넷에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가 마음에 들어 카페에 올려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지역 코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DVD를 보기 위해 암호화를 피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야 할까? 기존의 혁신적 기술이 저작권과 충돌을 빚었던 것처럼,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인터넷에서의 접근과 복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균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과 이러한 기술 혁신이 정보와 문화의 생산, 유통, 향유의 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리에 대한 강화된 보호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인권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음반을 사기 전에 레코드점에서 음반을 들어보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친구의 책을 빌려보는 것 역시 물리적인 복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다르다.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없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되기 때문이다. 만일 인터넷에서 복제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전에 권리자에게 접속 허락을 받아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읽을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문제는 실제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07년 4월 타결된 (그러나 2009년 8월 현재까지 양국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 규정은 1996년 체결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조약에 포함되지는 않은 바 있다.

일시적 저장 (temporary reproduction)

인터넷으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 홈페이지 서버의 데이터가 내 컴퓨터로 전송되어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진다. 이때 그 데이터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램(RAM)이나 하드디스크의 임시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다른 명령이 실행되거나 컴퓨터 전원이 꺼지는 경우 사라진다. 하드디스크 등에 영속적으로 저장되는 것과 대비하여, 이를 ‘일시적 복제, 혹은 일시적 저장’이라고 부른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복제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의 경우 권리에 대한 제한 혹은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원래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란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법이 있어도 모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리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자구책이다. 저작권법은 다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예를 들어, 암호를 깨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권리자들의 자구책을 다시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이용의 섬세한 균형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으로는 어떠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다면 법에서 허용한 공정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이를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를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즉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로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에 접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책을 읽는 것조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말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DVD에는 지역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 산 DVD를 한국에서 생산된 DVD 플레이어로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 지역코드가 일종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인데, 만일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DVD를 볼 수 있는 DVD 플레이어를 만든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하에서의 7년>이라는 문서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공정이용 및 기술 혁신을 제약한 여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창작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소설이나 음악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창작한 완결적 저작물만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수정, 변환, 조합, 편집 등의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도 창작물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과 달리,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수정 및 편집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

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중 가요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며,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영상을 만드는 것도 보편화되고 있다. 박지성 골장면 모음과 같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에 대한 짧은 영상도 인기를 얻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여러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반핵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창작 행위들은 비록 시장에서 유통될만한 가치는 없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창작물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패러디’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서 권리자의 허락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업 영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비영리적 창작자의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박지성 골장면 모음 동영상 클립을 만들기 위해 일일이 방송사 허락을 맡을 이용자가 있을까? 취미로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해보기 위해 일일이 작곡, 작사가, 가수, 음반사 등에 연락하여 허락을 맡아야 하고 이용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누가 감히 엄두나 낼 수 있을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와 같은 (특히 비영리적인) 2차 창작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행 저작권 체제의 이용허락 방식은 변화된 창작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최근 블로그나 UCC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제 소수의 문화 창작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문화 창작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창작자, 이용자의 구분은 약화되고 있으며,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영리적 생산자들이며, 직업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 욕구에 의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창작 활동을 한다. 저작물 유통에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처를 표기한다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의 최소한의 예의일 뿐,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이나 이를 통한 영리추구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 체제 하에서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 부여된다. 즉,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의 행사를 원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지 모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우려하여 저작물 이용을 주저하거나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설사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내심 용인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은 사실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조이다.

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인터넷의 핵심은 ‘소통과 공유’라는 점에서 정보의 ‘배타적 소유’를 전제로 한 저작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터넷이 가져온 소통과 공유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정보화에 따라 국내 도서관도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집에서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원격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학내 교수실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조차 금지되고 있다.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심지어 도서관 내에서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허락받은 도서의 수로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긍정적 이점들을 모조리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서를 열람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고, 여전히 동시 열람자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규제를 만든 이유는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 열람 서비스가 도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 논문이나 절판된 서적과 같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서적까지 원격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용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디지털 환경은 사람들이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문화 상품의 소비자로서 개인적으로 문화 상품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형성하여 감상을 나누기도 하며,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통해 적극적인 비평을 하기도 한다. 물론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저작물을 매개로 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과거에는 주로 지인들 사이에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인터넷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저작물이 매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화평이라면 특정 영화가 다루어질 것이며, 문학 동아리라면 특정 문학 작품을 주제로 품평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 체제 하에서는 소통의 매개자로서의 저작물이 단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오프-환경과는 달리 임의의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 위반으로 통제한다면 자연스러운 문화적 소통 자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불멸의 이순신 팬카페

지난 2005년, KBS는 네이버에 개설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팬카페인 ‘영원불멸 이순신’ 카페에 공문을 보내 올라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카페는 단지 드라마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며, 소통의 일환으로 드라마의 스틸 사진이나 동영상 클립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결국 카페 회원들은 요구받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카페 회원들의 문화적 소통을 막은 대가로 과연 KBS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KBS가 자체 저널에서 이순신의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자작 소설을 쓰는 카페 회원들의 새로운 창작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한 바도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저작권은 투자보호법

여전히 우리는 저작권의 권리 주체를 소설가나 작곡가와 같은 ‘낭만적 저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의 보호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이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혹은 기업에 종속된 계약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7

자신의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인권은 저자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저자와 저작물, 그리고 민족, 공동체 또는 기타 집단과 그들의 집단적 문화유산 간 인격적인 유대를 보호하는 반면, 지적재산권 제도는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한다. 또한, 제15조 1(c)항에 규정된 저자의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의 범위는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 하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지칭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불리는 1709년 앤 여왕법 이전에는 ‘작가의 권리’라는 것은 없었으며, 출판조합이 국왕의 특허 하에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출판조합의 독점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앤 여왕법 역시 보호하는 저작권은 작가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출판가의 권리’였다고 한다.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을 통해 ‘작가’와 ‘보호받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한편, ‘작가’라는 개념(혹은 저작자의 권리라는 이데올로기)은 독점적 출판업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기도 하지만, 출판업자들이 자신의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한 논리이기도 하다. 과거의 서적상이 음반사, 영화사, 소프트웨어 업체로 확대되었을 뿐, ‘작가의 권리’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출판사 독점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들 문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 로비 활동을 벌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지적재산권 법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트립스 협정)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트립스 협정의 경우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전자회사인 IBM 등이 주도한 업체 연합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마키마우스 보호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소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 되고 있다. 앤 여왕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기간이 최초 14년이었으며, 저작자가 살아있을 경우 14년의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이후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는데, 미국은 지난 1998년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해 자국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법인의 경우 공표 후 95년) 연장하였으며, 이후 FTA를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소니보노법’은 2004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운명에 있었던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4년 포브스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일 만하다.

이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기업의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창작과 이용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저작권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기업의 투자 보호는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화향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저작권 체제의 개혁

그럼, 현행 저작권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우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편향된 현행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저작권이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지 않도록 ‘공정 이용’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비영리적 표현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기표현이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은 대부분 실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저작권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복제에 한정되어야 한다. 권리자들은 이용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중립적인 사업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경우, 그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을 규제하는 사적 검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작 즉시 모든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모든 창작자들이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시장 가치가 상실된 대부분의 저작물들도 저작권에 의해 이용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권리자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한다면,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도 명확해지고, 이용 허락을 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나치게 긴 저작권 보호기간도 일정 기간 후 ‘등록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 즉,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다. 물론 저작권 제도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만큼, 일국적 차원에서의 개혁은 쉽지 않지만, 더 나은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의 향상, 발전이 저작권 정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활성화할 공공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서 생산된 저작물,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논문, 공영 방송 프로그램 등 공적자금으로 생산된 모든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저작물은 도서관 등 공적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 센터나 공공 채널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다.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리처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것에 회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그 출발로써, 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그누 운영체제에 리눅스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그누/리눅스(GNU/Linux)라고 불러야 맞다.

리처드 스톨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고안하였는데, 먼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GPL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라이선스이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GPL을 채택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

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현실 법체제이지만, 카피레프트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의 확산

GPL은 일종의 라이선스,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약관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영역에서도 GPL과 같은 정보공유를 지향하는 표준 약관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공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저작물이 더 널리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작자들도 많다. 혹은 비영리적 이용에 한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들이 별도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저작자의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저작권 체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의 표시나 이용 조건을 사전에 명시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다. (<http://creativecommons.org>) 이는 인터넷 법률의 권위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 각 국에 지부를 갖고 있으며, 지난 2003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도 발족한 바 있다. 국내에는 정보공유연대의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2004년 공개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있다. (<http://freeuse.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나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것인지 등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라이선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안적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확대될수록,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될 것이다.

토론주제

1. 인터넷에서 문화적 표현이나 소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가 역으로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공정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터넷에서의 공정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비영리 인터넷 방송을 위해 대중 가요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도 좋은가? 혹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을 친구와 공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2.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3. 문화 창작의 활성화가 저작권 보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례를 찾아보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4 생명권과 의약품 특허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였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해마다 5만 여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00여명의 환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지난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소아마비가 유독 박멸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백신의 개발자인 소크 박사의 공로가 크다. 그는 백신 발명 이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소크 백신의 특허를 부여받고, 제약회사에 양도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크 박사는 백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특허가 없는 의약품은 누구든 그 약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에 소크 백신은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되었다.

백신의 개발로 유명세를 얻었던 때, 소크 박사는 TV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의약품과 특허, 어울리는 조합일까?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특허법에 따르면 독점을 보호받는 기간은 ‘특허를 출원한 이후 20년’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다수의 물건들은 특허로 보호받는다. 지우개 달린 연필처럼 간단한 발명도 있지만, TV나 핸드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은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의 특허 발명으로 만들어진 다. 디지털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역시 고도의 복잡한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특허 발명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다른 발명들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이 제약 분야에서 특허라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역으로 특허 제도 내에서 의약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낳는다.

의약품 특허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다른 특허 발명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바로 약을 생산하는 제약 회사에게는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지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현실이다.

의약품 특허의 정치경제학 1 : 공급의 측면

제약 산업은 1960년대 냉전시대부터 2002년까지 이윤율 1위를 계속 고수해온 유일무이의 고수의 산업이다.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면 세계 인구 증가와 노령화, 만성병 증가의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즉, 특허를 통해 의약품의 원료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점이 가능한 제약 산업의 특징과, ‘기술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써 이러한 독점을 심화시킨 결과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화해할 수 없는 ‘완벽한 독점’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오롯이 의약품 그 자체가 되어 특허를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TV나 핸드폰 등 다른 특허 발명과는 달리 단 하나의 특허만으로도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하나의 특허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는 말 그대로 ‘완벽한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완벽한 독점’은 그 무엇보다도 화해하지 않는다. 전자 기계 분야와 제약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을 비교해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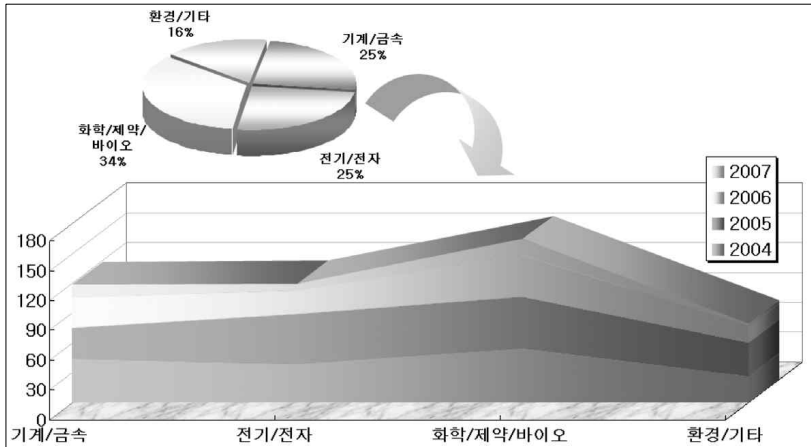
2004년 한국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소니는 2만 여건에 달하는

양사의 보유 특허에 대해 2008년까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상호실시허락)’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삼성전자와 소니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각각 1만1000여건, 1만3000여건이었다.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회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증가하자, 특허를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자기계 분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특허 분쟁이 일어나도 중국에는 분쟁 당사자 간에 승패를 가르기 보다는, 상대방의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제약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은 이와 같은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하나의 특허가 하나의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전자제품처럼 나누어 가질 특허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허권자인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독점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 번 개발된 의약품은 보통 그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독점이 사라질 경우 의약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폭이 무척 크다. 때문에 제약 분야의 특허분쟁은 화해보다는 어느 한 쪽의 시장진입 아니면 퇴출로 결론이 난다. 이처럼 독점이 주는 이익이 큰 반면, 그 독점이 깨질 때 입는 피해가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하기에 제약 산업에서는 다른 분야의 산업보다 특허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산업분야별 특허분쟁 전체 동향



세부 기술별 주요 분쟁 현황



*출처: 김건형, “최근 미국 특허분쟁 현황”.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19권4호, 2008.

2007년 미국 “특허분쟁지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004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처리한 특허분쟁 사건에서 화학·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분쟁이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의약품 관련 분쟁은 총 50건으로, 보고된 산업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다.

2010년을 전후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위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상당수가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의약품의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제약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 (Generic Medicine)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복제약 또는 카피(copy)약이라 불린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거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특허를 가진 제약회사 외의 다른 제약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같은 효능을 지닌 특허 의약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일례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생산



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국내 가격이 한 알에 23,035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인도의 제약회사 ‘나코’가 생산하는 글리벡의 제네릭 의약품인 ‘비낫’ 한 알에 2달러, 약 2천원 정도였다. 당시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845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낫(왼쪽)과 글리벡(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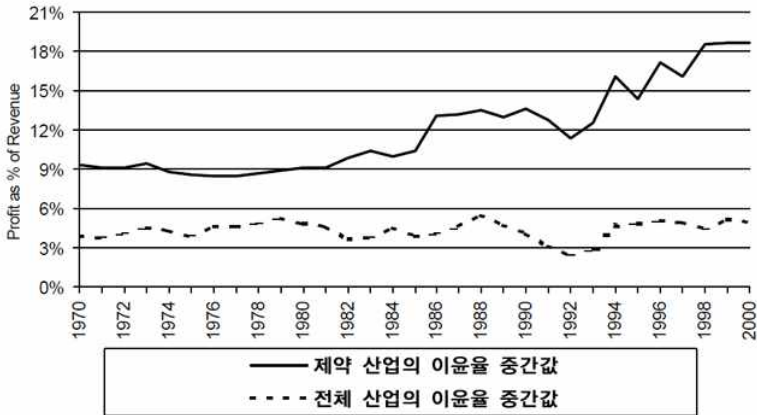
연구개발 비용의 신화

의약품이 개발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되면 모방하기가 매우 쉽고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회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얼마만큼 투자를 할까?

제약회사가 매년 공개하는 예산 보고서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 비용의 2배를 넘는 마케팅 비용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쉐링-프라우’가 1998년 항알레르기 약물인 ‘클래리틴’을 광고하느라 쓴 돈은 1억 3천6백 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같은 해에 지출된 ‘코카콜라’ 광고비용보다 많은 액수이다.

2002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오른 미국 10대 제약회사들의 평균 순이익률은 매출액(2,170억 달러) 대비 약 18%였다. 다른 모든 기업들의 순이익률 중간 값이 매출의 3%임을 감안하면 6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은행업조차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13.5%에 머무르면서 제약 산업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또한, <포춘>의 목록에 오른 10대 제약회사의 순이익을 모두 더한 액수인 359억 달러는 나머지 490개 기업의 순이익의 합인 337억 달러보다 크다.

<포춘> 500에 선정된 제약산업과 전체산업의 이윤을 비교
(1970-2000)



*출처: Public Citizen, *Rx R&D Myths : The Case Against The Drug Industry's R&D "Scare Card"*, 2001.

비슷한 시기 제약 회사가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14%를 조금 넘는 310억 달러로 순이익보다 적은 비용이다. 반면,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의 31%인 670억 달러에 이른다. 노인들이 주로 복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2000년 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중이 연구개발비보다 2~3배 정도 높다. 이처럼 연구개발비보다 큰 마케팅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제약 산업은 최고의 이윤율을 남기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 제약회사들의 회계 보고 (2000)

회사 명	순 매출액 (단위 : 백만 달러)	Percent of Revenue Allocated to :		
		마케팅, 광고, 관리	R&D	순 이익
Merck and Co., Inc	\$40,363	15%	6%	17%
Pfizer Inc.	29,574	39%	15%	13%
Bristol-Myers Squibb Company	18,216	30%	11%	26%
Pharmacia Corporation	18,144	37%	15%	4%
Abbott Laboratories	13,746	21%	10%	20%
American Home Products Corporation	13,263	38%	13%	-18%
Eli Lilly and Co.	10,862	30%	19%	28%
Schering-Plough Corporation	9,815	36%	14%	25%
Allergan, Inc.	1,563	42%	13%	14%

*출처: Families USA, *Off the Charts: Pay, Profits and Spending by Drug Companies*, 2001.

미국의 비영리 의료 기구인 카이저 퍼마난테 메디컬 그룹의 샤론 레빈 부회장은 2002년 피터 제닝스의 <ABC 스페셜>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내가 제약회사라고 칩시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약의 구조에서 분자 딱 하나만 바꾸면 특허를 20년 연장할 수 있고, 매일 먹는 ‘프로작’(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생산하는 우울증 치료제)보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프로작이, 또한 차세대 ‘프릴로섹’(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는 위궤양 치료제)이 훨씬 좋은 약이라고 의사와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약물을 찾는 불확실한 노력에 돈을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특허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보상’이 아닌 ‘독점’의 역할에 충실하다. 의약품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 의약품과 동일한 기술이라면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는커녕 아예 생산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승자 독식 구조는 새로운 발명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존의 특허를 ‘우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면서 오히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 샤론 레빈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의약품 특허의 정치경제학 2 : 수요의 측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아무리 큰 폭으로 상승을 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약품의 가격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은 보통 한 제약 회사가 생산과 판매를 모두 독점한다. 이처럼 필수적인 재화가 독점 시장에 놓이면 자유시장경제의 ‘보이지 않은 손’이 수요와 공급을 인도할 수 없다. 재화의 가격과 생산량은 제약회사의 ‘보이는 주먹’에 좌지우지 된다. 다시 말해, 의약품 시장에서 “공급은 수요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별하고, 창출하며, 심지어 없애기까지 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의약품

2006년 8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6차 국제에이즈회의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애보트’의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HIV/AIDS 감염인과 활동가들에 의해 점거 당했다. 애보트가 생산하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때문이다.

이 약은 냉장보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사실 상 투약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이에 수년전부터 에이즈 환자와 의사들은 열에 안정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치료제를 요구했다. 2004년 방콕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애보트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알약 형태의 칼레트라 개발을 약속했다.



태국 국민들의 애보트
보이콧 운동

2006년 애보트는 “개발도상국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서 연간 환자 당 2,200달러, 아프리카와 최빈국에서는 연간 환자 당 500달러의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공급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대다수 에이즈 환자들이 하루 1달러조차 벌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가격으로 제시한 2,200달러 역시 300%의 수익을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HIV/AIDS 감염인과 활동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1월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과 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 활동 결과, 애보트는 2007년 4월 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칼레트라 가격의 연감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다.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다. 남반구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에이즈는 이 갈등의 정점에 있는 질병이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에이즈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에이즈 치료제 가격은 그들의 1년 소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2007년 유엔에이즈계획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5년 후에, 인도와 중국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3천 100만 명, 1천 8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아프리카에서만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품의 가격은 각국의 보험제도나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상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년이라는 특허 보호 기간 만료 전후의 가격차이나, 특허를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의약품 가격 차이가 100배가 넘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의 가격 문제는 개별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실제 고가의 의약품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엄청난 의료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2008년 1월 31일 미국 의회예산처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미국 GDP의 16%인 총 의료비용이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82년 GDP의 100%에 이르게 된다. 의회예산처는 충격적인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허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꼽았다.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기간이 1년 씩 증가할 때마다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60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1년 이후 한국의 약제비는 매

년 14%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용에서 약제비 비중은 2006년 26.7%로 OECD 평균인 1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내 약제비 비중 추이 현황 (2001~2006)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 진료비	178,195	190,606 (7.0%↑)	205,336 (7.7%↑)	223,559 (8.9%↑)	247,968 (10.9%↑)	285,580 (15.2%↑)
총 약제비	41,804	48,014 (14.9%↑)	55,831 (16.3%↑)	63,535 (13.8%↑)	72,289 (13.8%↑)	84,041 (16.3%↑)
약제비 비중	23.5	25.2	27.2	28.4	29.2	29.4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06.5.3.

생산량이 부족한 의약품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30%인 약 17억 명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을 불충분하게 공급받거나, 아예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다.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이 주된 원인이나, 제약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A형 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9년 6월 11일 WHO는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멕시코에서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한 지 겨우 58일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6월 20일 현재 신종 플루 감염자는 75개 나라에서 3만 5,900여 명, 사망자는 170여 명에 이른다. WHO의 대유행 선포는 약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68년 ‘홍콩 독감’ 사태 이후 41년만의 일이다. 또한, 신종 플루는 1916년에서 19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 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유전자 타입으로, 그 치사율과 전염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신종 플루의 유일한 경구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 및 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 즉 ‘타미플루(Tamiflu)’이다. 또 다른 치료제로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이 생산하는 ‘리렌자’가 있으나, 흡입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타미플루가 보편적으로 투약되고 있다.



타미플루

2004년 <사이언스>지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보급이 된다 해도 오셀타미비르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2004년 AI(조류독감)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WHO는 ‘인구대비 최소 20%’(약 12억 명)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 확보를 권고했다. 덕분에 로슈는 2005년에는 1조 달러의 이득을 챙겼으나, 타미플루 가격(성인 한 사람당 복용량인

10정의 가격)은 60달러에 이르면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게다가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도 10년이 걸려야 WHO의 권장량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WHO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들은 타미플루를 로슈가 아닌 제3자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발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특허권자인 로슈는 2005년 10월 13일 타미플루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6년까지 제3자가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타미플루의 공동 생산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이 타미플루의 원료 물질 생산의 일부를 맡게 되었다.

2009년 현재 타미플루의 수요와 공급 간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이 타미플루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수요까지 감당할 분량은 사실 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은 고작해야 4억 명의 인구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 결과 현재 타미플루 가격은 최고 4~5배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하며, 남미 국가에서는 90달러까지 치솟았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2009년 10월까지 확보 가능한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명 분이나, 이 중 현재 비축하고 있는 220만명 분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것이다. 사실 상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A형 인플루엔자 (Influenza Virus A)

인플루엔자는 크게 A, B, C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C형은 통상 감기라고 부르는 것이며, B형은 매년 유행하여 상당한 수의 사망자를 낳는 계절성 독감이다. 두 가지 인플루엔자는 모두 대유행병의 위협과는 무관하다.

A형 인플루엔자의 주요 숙주는 오리와 물새류이나, 현재 다른 조류와 포유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횡단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유전자 배열을 달리하며 변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H1N1), 1957년 아시아 독감(H2N2), 1968년 홍콩 독감(H3N2), 2004년 AI(H5N1)등이 모두 A형 인플루엔자이다.

생산조차 되지 않는 의약품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 유형을 연구한 결과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 현상을 발견한다. 파레토의 ‘20대 80의 법칙’은 의약품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82.4%는 전 세계 인구의 19.3%가 소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는 제약회사가 매력을 느끼는 시장이 아니다. 그 결과 질병이 부유한 사람들을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질병의 부익빈(富益貧)빈익부(貧益富)’ 현상이 발생한다.

일례로 결핵 치료제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분량이 많지 않다. 또한, 2차 치료제까지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결핵은 가장 부유한 나라 5개국의 발병률보다 가장 가난한 나라 5개국의 발병률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제약회사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열대 질병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1년 7월, 국내에서 한 항만 노동자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정맥 주사용 ‘염산 퀴닌’을 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치료제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염산 퀴닌 주사제는 ‘국가 비축용 희귀 의약품’에 속해 정부가 항상 100명 분량의 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 질병 치료제는 제약회사의 생산 기피로 말미암아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이 질병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약품, 나아가 과학 기술의 전반적인 상업화 흐름과 관련이 있다.

1980년 미국 상원에서는 버치 베이와 로버트 돌 의원이 발의한 “특허 및 상표권 개정안”이 통과된다. ‘베이-돌 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았어도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는 연방정부가 아닌 대학 혹은 연구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게 하였다. 특허를 통해 기술 혁신과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유인하려 한 베이-돌 법 입안 이후, 미국 내 특허 출원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호주국립대학교의 피터 드라호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85년

미국 내 연구소의 특허 출원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30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베이-돌 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애초 기대했던 기술 개발 효과는 미미하고, 과학 기술 연구 풍토의 상업화만 부추겼다는 평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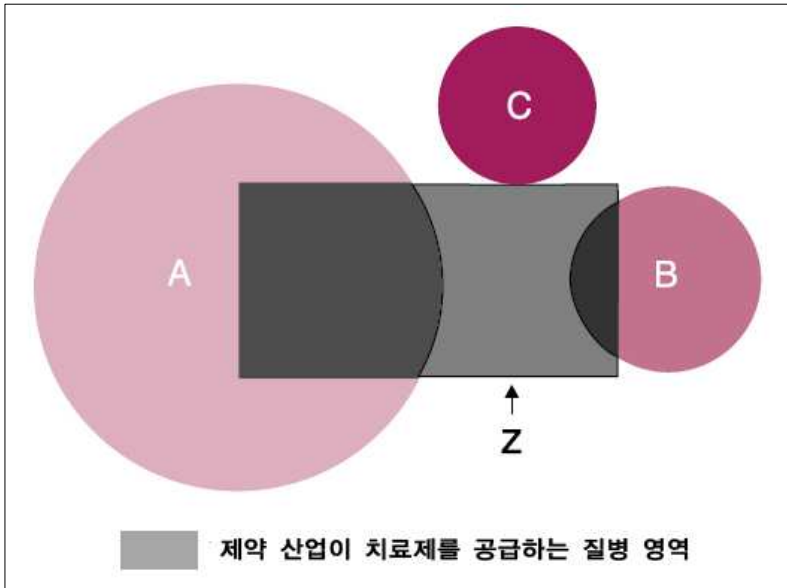
과학 기술의 상업화로 인한 폐단은 특히 의학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영국의 의학전문지인 <란셋> 2002년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9년까지 개발된 1,393개의 신약 중 16개만이 저개발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대병과 결핵 치료제였다. 보고서는 암과 같은 선진국 형 질병 치료제 시장은 후진국의 ‘무시되는 질병’ 치료제 시장의 1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무시되는 질병이란, 그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공급량이 수요량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아래 그림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영역과 제약 산업의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A 영역은 암, 심혈관질환, 정신신경질환들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질병들이다. 제약회사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고루 분포하지만,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이들 의약품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는 제약 산업이 커버하지 않는다.

B 영역은 소위 ‘무시되는 질병’의 영역이다. 말라리아, 결핵 등이 속한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은 ‘최소한의 이익(한계이익)’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공급받는 집단 역시 A 영역보다 훨씬 적다.

제약 산업이 치료제를 공급하는 질병의 종류



*출처: MSF, Fatal Imbalance : The Crisi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2001.

C 영역은 ‘가장 무시되는 질병’으로 주로 수면병과 같은 열대 질환들이 속한다. 주로 남반구의 최빈곤 국가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지만 치료제 개발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A, B, C 어느 것과는 겹치지 않은 Z 영역에서 공급되는 의약품은 흔히 ‘해피 드러그’, 또는 ‘라이프스타일 치료제’라고 불린다. 탈모나 주름 방지,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약들이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의 수요가 커서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영역이다.

타미플루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제약회사는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약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로슈의 한국 지사장인 울스 플루어키거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2008년 7월 3일, 그는 식약청의 시판 허가 이후 4년 째 판매되지 않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국내 공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

생명권 특허의 충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예술가의 창작품과 과학자의 발명은 모두 사회가 그에게 제공한 문화와 과학기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써 지적재산권이란 제도를 고안한 것이다. 다른 기본권과 달리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 각각 20년, 5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호기간 역시 시대와 국가별로 다르다. 1987년 이전 한국의 특허 보호기간은 12년이었으며, 트립스 협정이 체결되기 전 미국의 특허 보호 기간은 17년이었다.

다양한 국제 협약과 선언들은 지적재산권과 다른 기본권, 특히 생명권과 충돌할 때 지적재산권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17>과 2001년 80여 개 국가들의 합의로 채택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 등이 있다.

사회권 위원회의 사회권 규약에 관한 <일반논평 17 :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이의 권리>는 지적재산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힌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WTO 출범 이후 회원국 간 최대의 쟁점은 의약품 특허에 관한 것이었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내세우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개발도상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도하 선언문이다.

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한다. 선언문은 각 회원국이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의 범위 역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사태의 상황’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되는 공중 보건의 위기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제약 산업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 회원국들이 트립스 협정 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선진국의 주장도 일부 반영되었다.

같은 해 12월, 사회권 위원회 역시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성명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의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밝힌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

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를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

전체 73개 조항 중 의약품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조항은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제27조), △의약품의 병행수입의 허용 문제(제6조, 제28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제31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협정 이행 유예 기간(제65조, 제66조), △의약 및 농화학 물질특허 출원에 대한 특례(제70조 제8항), △의약 및 농화학 물질의 배타적인 제조·판매권(제70조 제9항) 등이다.

강제실시를 둘러싼 오해들

강제실시(強制實施)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받은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물론,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이용, 즉 생산, 판매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천명하고 있기에, 강제실시는 특허제도의 필수적인 장치이다.

WTO의 트립스 협정 제31조,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와 107조에서도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동되며,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특허 발명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특허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강제실시가 발동되어도 특허는 유효하다.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특허의 ‘보호’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도 그의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권자는 다만 정부나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없을 뿐이며, 대신 특허권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강제실시는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도 강제 실시 요구가 빗발치는 대상이 바로 의약품이다. 미국의 경우 강제 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2001년 9·11 사태 이후 탄저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엘’사가 공급하는 치료제인 ‘씨프로’에 대해 강제실시를 검토했다. 그 즉시 바이엘은 씨프로를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어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면, 의약품을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약값은 협상을 통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도록 해서 저절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하나뿐이라면, 의약품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약은 다양한 곳에서 생산되어야만 한 국가, 또는 국제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강제실시는 약값의 인화와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시키면서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국내에서는 1961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으나, 1978년의 강제실시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2002년, 2008년에 각각 청구된 두 번의 강제실시는 모두 환자들이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2002년 1월 30일, 한 알에 약 2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을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백혈병 환자와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4일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 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

2008년 12월 23일, 국내의 에이즈 환자단체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한다.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가 제시한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식약청의 시판 허가가 내려진 이후 4년 넘게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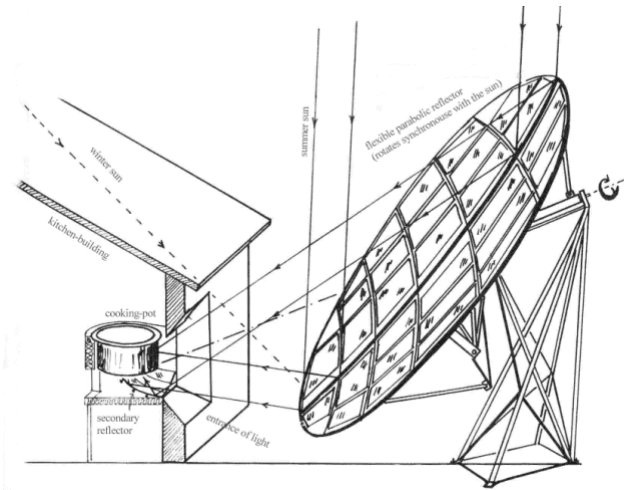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케냐의 가난한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40도를 넘는 뜨거운 날에도 무거운 나뭇짐을 머리에 매고 하루 평균 6시간 씩 걸어 다닌다. 또한, 요리를 하는 동안 화덕에서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1년에 수십만 명 이상이 폐질환에 시달린다.

독일의 발명가 볼프강 쉘플러가 만든 태양열 조리기는 케냐 여성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1982년 그가 태양열 조리기를 들고 케냐를 찾은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뿔감을 구하러 다니거나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아도 되었다. 뿔감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을 절약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요리를 해도 연기가 나지 않아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1990년부터 쉘플러는 그의 활동 무대를 인도로 옮긴다. 큰 접시 모양의 판처럼 생긴 ‘쉐플러 조리기’는 한 끼에 3만 명, 하루 최대 10만 명분의 식사를 만들 수 있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인도의 공장과 병원, 화장터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쉘플러 조리기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1천명 이상의 요리가 가능한 쉘플러 조리기가 전국에 10여개나 설치되어 있다.

쉐플러의 태양열 조리기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21개의 국가에 2,000여 개의 쉘플러 조리기가 보급되었다. 뛰어난 열효율을 가진 환경 친화적 발명품이 이처럼 빠르게 보급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태양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가 조리기에 특허를 내지 않아서이다.

2009년 2월, 쉘플러는 한국의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대안기술센터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 곳의 사람들에게 쉘플러 조리기 제작 이론과 기술을 전수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자유롭게 쓰여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토론주제

1. 공정거래법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독점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특허와 저작권에 의한 시장 독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를 각각 찾아보자. 두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라.

3. 최근 WHO는 신종 플루를 ‘세계적 대유행’ 질병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2월까지 WHO의 국가 비축 권장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법 제106조 및 107조를 검토하여, 현재 강제실시 발동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라.

참고자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 허버트 실러, <정보 불평등>, 김동춘 역, 민음사, 2001.
- 정재황·전정환·이인호·임지봉·황성기,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12.
- 잭 골드 스미스·팀 우, <인터넷 권력전쟁>, 송연석 역, 뉴런 (NEWRUN), 2006.
- 크리스 애튼, <얼터너티브 인터넷>, 민인철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 데이비드 라이언, <전자 감시 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문고, 2002.
- 렉 휘태커, <개인의 죽음>, 이명균·노명현 역, 생각의나무, 2007.
- 영화 <네트 (The Net)>, 어윈 윙클러 감독, 미국, 1995.
- 영화 <가타카 (Gattaca)>, 앤드류 니콜 감독, 미국, 1997.

-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토니 스콧 감독, 미국, 1998.
- 소설 <1984>, 조지 오웰, 1947.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 로렌스 레식, <코드>, 김정오 역, 나남, 2002.
- 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Vintage, 2002.
- 로렌스 레식, <자유문화>, 이주명 역, 필맥, 2005.
- 잭 골드 스미스·팀 우, <인터넷 권력전쟁>, 송연석 역, 뉴런 (NEWRUN), 2006.
- 다큐 <이 영화를 훔쳐라 1 (Steal this film 1)>, The League of Peers, 2006, <http://stealthisfilm.com/Part1>.
- 다큐 <이 영화를 훔쳐라 2 (Steal this film 2)>, The League of Peers, 2008, <http://stealthisfilm.com/Part2>.
- 애니메이션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Blender Institute, 2008, <http://www.vimeo.com/1084537>.
- 애니메이션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Blender Institute, 2006, <http://orange.blender.org>.
- 소설 <읽을 권리>, 리처드 스톨만, 1997, <http://www.gnu.org/philosophy/right-to-read.ko.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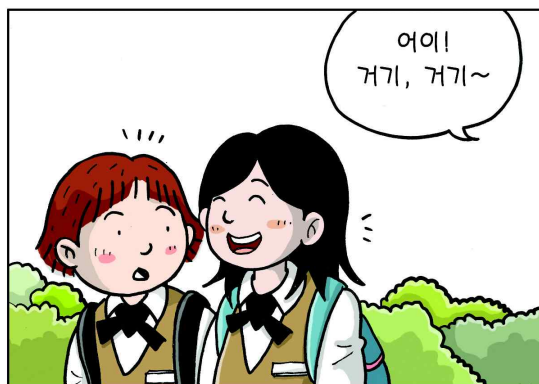
생명권과 의약품 특허

- 마르시아 안젤, <제약회사는 어떻게 우리의 주머니를 털었나>, 강병철 역, 청년의사, 2004.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2005, <http://www.ipleft.or.kr/node/2484>.
- 장하준, <국가의 역할>, 황해선 역, 부키, 2006.
- 우석균, “내 것 남 주면 손해라고? 아니야, 함께 나누면 더 커져! 돈보다 훨씬 고귀한 생명 이야기”,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 걸>, 낮은산, 2008.
- 다큐 <The Constant Gardener>, Fernando Meirelles 감독, 독일, 2005.
- 다큐 <Health for Sale>, Michele Mellara 감독, 인도, 2007.
- 다큐 <희망은 사람의 몫 : 윤가브리엘의 이야기>, 참세상, 한국, 20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media_report&id=1218&pag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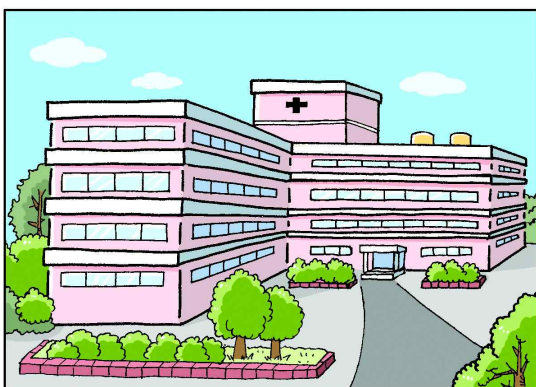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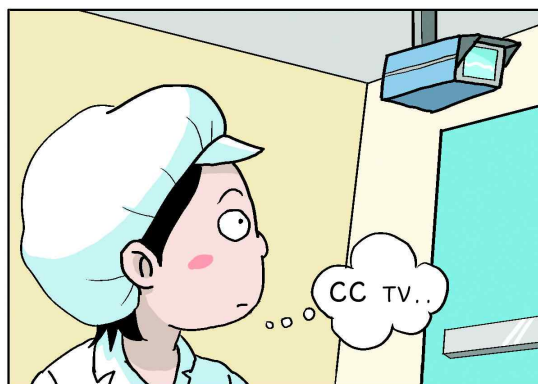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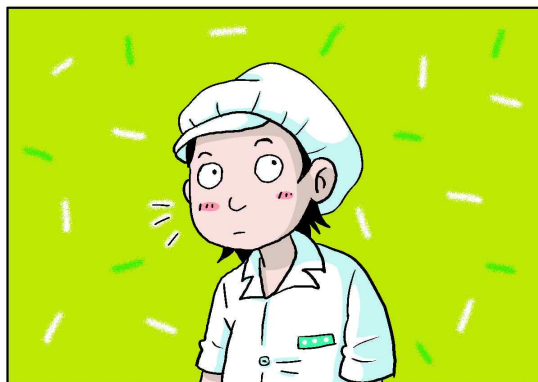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정치적활동은
보장되어야해. 그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야.
난, 소중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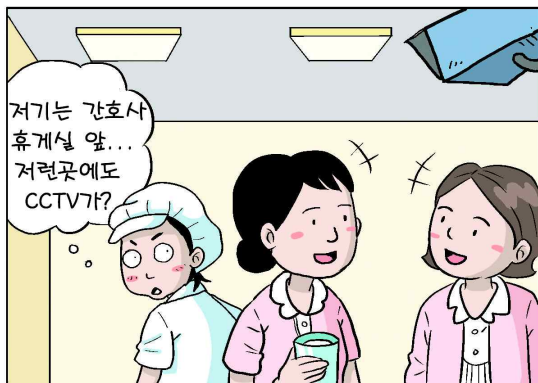


다 보여요
미선씨~

















어떤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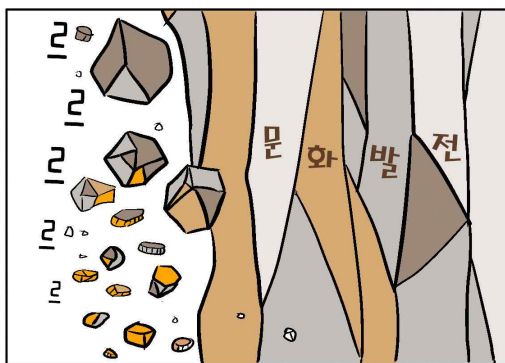












저작권으로 배부른 사람 ..정작 따로 있다.

내 친구 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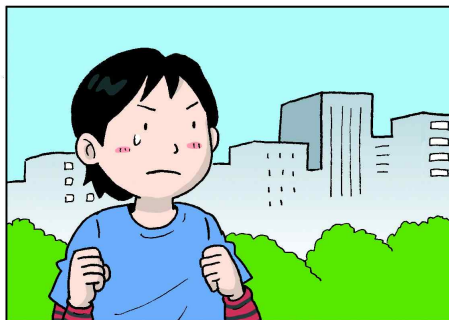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강좌

※ 본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인권단체협력사업에 의한 것이며 본 책자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우120-840)

전화 02)774-4551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della@jinbo.net